

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[별표 2의3] <개정 2013.12.31>

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

과 명	분 장 사 무
총 무 과	1. 서무·인사·문서·연금·통계·표창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관인의 관수 2. 청사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 3. 공보에 관한 사항 4.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.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교 무 과	1.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교육훈련의 실시 및 이에 관한 기록의 작성·보관에 관한 사 항 3. 교육교재 및 자료의 수집·작성과 편찬에 관한 사항 4. 각종 시험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5. 교육훈련결과의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 6. 교수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